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등기번호	029568		
등록번호	110111-0253908		
상 호	주식회사 키스톤글로벌	2010.03.25 변경	2010.03.31 등기
		2011.06.27 변경	2011.06.28 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2-8 소봉빌딩 4층	2011.03.18 변경	2011.03.22 등기
		2011.03.18 변경 2011.03.22 등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eystoneglobal.co.kr)에 한다. 단,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주의 금액	금 500 원	2003.01.18 변경	2003.01.18 등기
		2012.03.09 변경 2012.03.15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27,417,491 주		금 13,708,745,500 원	
보통주식 27,417,491 주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2012.12.26 변경	2012.12.27 등기

목 적

- | | | |
|---|----------------|----------------|
| 1. 전자, 전기, 반도체, 통신기계, 기구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설치, 임대 및 관련 서비스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2.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및 핵심부품 제조 및 판매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3. 자동제어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판매, 임대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5.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 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6.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7. 전기, 전자, 통신, 신호, 제어시스템 제작, 판매 및 유지보수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8. 반도체직접회로 개발 및 제작, 판매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9.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 정보 처리 및 제공기술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10. 전자상거래 사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11. 유무선 통신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12. 네트워크 장비 제조, 판매, 임대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13. 건물 냉 난방 공조 및 건물 유지보수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14. 건설가설재 제조판매 임대 및 설치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15. 강구조물 설치 공사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16. 기타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시공업 | <2006.03.10 추가 | 2006.03.10 등기>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3년02월21일 07시12분08초

등기번호	029568
------	--------

17. 철물 공사업	<2006.03.10	추가	2006.03.10	등기>
18. 토공사업	<2006.03.10	추가	2006.03.10	등기>
19. 무역업	<2006.03.10	추가	2006.03.10	등기>
20. 부동산임대업	<2006.03.10	추가	2006.03.10	등기>
21. 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06.03.10	추가	2006.03.10	등기>
21. 전기공사업				
22. 수변전특고기기 제작업				
23. 전기용품 판매업				
24. 소방설비업				
25. 전기설비업				
26. 토목공사 건설업				
27. 건축 및 토목공사업				
28. 포장 및 전기공사업				
29. 건축자재 판매업				
30. 건축자재 제조업				
31. 철강재 설치공사업				
32. 전문소방시설 공사				
33. 정보통신공사업				
34. 산업설비 용역업(산업공장, 종합환경)				
35. 전문기술 용역업(건설, 토질, 기초토목 구조, 산림부문)				
36. 토목시설 감리 전문업				
37. 전기통신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석도 설치 공사업				
38.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사업				
39. 교육개발사업(시설 및 서비스 사업)				
40. 도시 및 지역 개발 사업				
41. 부동산 개발 및 서비스 사업				
42. 관광리조트 및 주거, 상업시설 개발사업				
43. 도소매업	<2008.03.27	변경	2008.04.17	등기>
44. 조류기피제 판매업	<2008.03.27	추가	2008.04.17	등기>
45.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2009.08.14	변경	2009.08.17	등기>
46. 국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47. 부동산 자산관리업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48. 부동산 공동투자 컨설팅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49.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50. 상가운영 및 임대사업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51. 스포츠시설과 대중오락시설의 건설 및 운영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52. 주차장운영 용역업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53. 시설물 유지 관리업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54. 부동산 경매 및 투자관련 세미나 및 강의와 출판판매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55.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업의 설치 및 운영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3년02월21일 07시12분08초

등기번호	029568
------	--------

56.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57. 연수원건물의 설립 및 운영	<2009.08.14	추가	2009.08.17	등기>
58. 하이브리드, 연료전지개발, 제조 및 판매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59. 종합광고대행 및 기획업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60. 식품제조업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61. 식품도소매업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62. 프랜차이즈업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63. 식품.식자재 도소매 및 무역업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64. 침장류 및 수예품 제조 판매업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65. 섬유류. 의류 수출입업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66. 인터넷관련사업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67. 골프장 및 호텔 스포츠시설 기획, 소유 및 경영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68. 골프용품 등 스포츠용품 수출입 판매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69. 음식점경영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70. 식료품주류, 청량음료수, 일용품잡화 및 담배판매업	<2009.11.20	추가	2009.11.23	등기>
71. 자원개발, 광산개발 및 석탄 매매업	<2010.03.25	추가	2010.03.31	등기>
72. 선박매매업 및 용대선 사업	<2011.03.18	추가	2011.03.22	등기>
73. 항만운영개발 및 항만하역업	<2011.03.18	추가	2011.03.22	등기>
74.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11.03.18	추가	2011.03.22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김민규 740302-1*****	2007년 01월 31일 취임	2007년 02월 01일 등기
사내이사 김민규 740302-1*****	2010년 03월 25일 중임	2010년 03월 31일 등기
대표이사 김민규 74030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2 분당두산위브 104-2004	2007년 01월 31일 취임	2007년 02월 01일 등기
대표이사 김민규 74030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파크뷰 603-2503	2008년 09월 09일 주소변경	2008년 10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김민규 74030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2 분당두산위브 104-2004	2008년 12월 22일 주소변경	2009년 01월 09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김민규 74030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2 분당두산위브 104-2004	2010년 03월 25일 중임	2010년 03월 31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김민규 74030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2-4 힐스빌5차 102	2010년 04월 13일 주소변경	2010년 04월 20일 등기
사내이사 김대황 731214-1*****	2009년 11월 20일 취임	2009년 11월 23일 등기
사외이사 신인철 491220-1*****	2009년 11월 20일 취임	2009년 11월 23일 등기
사내이사 문정호 650501-1*****	2010년 03월 25일 취임	2010년 03월 31일 등기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정크리스토퍼영 550805-5*****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3년02월21일 07시12분08초

등기번호	029568
2010년 03월 25일 취임	2010년 03월 31일 등기
사외이사 홍승우 740301-1*****	
2010년 03월 25일 취임	2010년 03월 31일 등기
공동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정크리스토퍼영 55080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17 타워펠 리스아파트 이동 4804	
2010년 03월 25일 취임	2010년 03월 31일 등기
감사 김갑중 370829-1*****	
2012년 03월 09일 취임	2012년 03월 15일 등기

기 타 사 항

1. 1989년 11월 8일 명의개서대리인을 설치

명의개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의1

영업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의3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2003년 5월 21일 서울지방법원 화의인가등기 말소촉탁

2003년 05월 26일 등기

2003년 5월 21일 서울지방법원 화의인가등기말소촉탁

2003년 05월 26일 등기

1. 흡수합병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1202호 주식회사 스마트게이트를 합병

2006년 02월 21일 등기

1. 흡수합병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48-1 전주과학산업단지내 럭스피아주식회사를 합병

2006년 09월 19일 등기

지점에 관한 사항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포토맥레플리 프리저브 서클 8535번지(워싱턴)

2010년 06월 22일 설치 2010년 07월 06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 10회 보증전환사채]

1997년 3월 26일 전환사채 전액을 주식으로 전환 1997년 4월 8일 등기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제 13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삼십오억칠천오백만(3,575,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일십억원권 5매, 금일억원권 20매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13년02월21일 07시12분08초

- 4/12 -

등기번호

029568

금일십억원 금 오십억원원, 일십억원 금이십억원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이십억(2,00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가)행사 가능금액: 사채권면금액의 100%

나)행사가액 : 금 일천삼백육십이원(W1,362)/주당

다)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 각 행사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수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발행하지 아니함.

라)행사가액의 조정

①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B \times C \div D$$

조정후 행사가액=조정전 행사가액 \times A +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 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제 1)항에서 “시가” 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발행회사가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본 사채의 행사가액을 시가로 하되 다만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②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이 있는 경우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관리자가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영업의 전부양도, 인적분할또는 분할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영업의 전부양도, 인적분할 또는 분할합병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관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누릴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가 신주인수권관리자에게 부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관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이외에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29568
------	--------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이 중 높은 가액이 기존의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④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2011년 03월 11일)부터 최종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4년 02월 09일)까지로 한다.

2012년 12월 26일 일부행사 2012년 12월 27일 등기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제 1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육십억(6,00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일십억원권 5매, 오억원권 2매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금일십억원 금 오십억원, 금오억원 금일십억원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오십억(5,00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를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키스톤글로벌의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가)행사비율 : 각 인수인수권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행사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 단수주는 절사함.

나)행사가액의 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기준주가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정한 행사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그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행사가액 : 금2,634원(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라)행사가격의 조정

1)행사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1\text{주당 발행가액/시가}}$$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29568
------	--------

사가액을 조정한다.(1),2)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원 미만은 절상)
 3)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최초 1개월이 경과한 후, 이후 매 1개월마다 거래량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그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마.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2013년 2월 13일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5년 1월 6일)까지로 한다.

2012년 07월 25일 일부상환 2012년 07월 26일 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5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칠억팔천만(78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칠억팔천만원권 1매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금칠억팔천만원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칠억팔천만원(780,000,000)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사채권면액의 100%를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키스톤글로벌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가)행사비율 : 각 신주인수부사채 권면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행사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 단수주는 절사함.

나)행사가액의 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을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기준주가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단, 산정한 행사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 그 행사가액으로 한다.(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행사가액 : 금2,878원(원단위 미만은 절상)

라)행사가액의 조정

1)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29568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조정한다.(1), 2)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원 미만은 절상)

3)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의 제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최초 1개월 경과한 후, 이후 매 1개월마다 거래량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그 조정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마.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3년 2월 28일)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012년 07월 25일 변경 2012년 07월 26일 등기

신 주 인 수 권 부 사 채

제16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칠십억(7,00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일십억원권 6매, 금오억원권 2매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금일십억원 금육십억원, 금오억원 금일십억원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칠십억(7,00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를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키스톤글로벌의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가)행사비율 : 각 인수인수권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행사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 단수주는 절사함.

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행사가액의 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기준주가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정한 행사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그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29568

다)행사가액 : 금2,878원(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라)행사가액의 조정

1)행사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x 1주당 발행가액/시가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 만큼 행사가액을 조정한다.(1),2)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원 미만은 절상)

3)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최초 1개월이 경과한 후, 이후 매 1개월마다 거래량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그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마.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9일이 경과한 2013년 04월 06일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012년 07월 25일 변경 2012년 07월 26일 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

제 17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

금오십억(5,00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금일십억원 4매, 금오억원 2매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금일십억원 금사십억원, 금오억원 금일십억원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오십억(5,000,000,000)원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를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키스톤글로벌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가)행사비율 : 각 인수인수권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29568

를 행사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 단수주는 절사함. 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행사가액의 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가 기준주가보다 높을 경우 그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정한 행사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 그 행사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행사가액 : 금2,634원(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라)행사가액의 조정

1)행사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x 1주당 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 만큼 행사가액을 조정한다.(1),(2)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후 원 미만은 절상)

3)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최초 1개월이 경과한 후, 이후 매 1개월마다 거래량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그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마.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2013년 04월 06일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15년 3월 6일)까지로 한다.

2012년 07월 25일 변경 2012년 07월 26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회사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29568

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2006 년 03 월 10 일 변경 2006 년 03 월 10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 주식으로 한다.

2)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11 년 03 월 18 일 변경 2011 년 03 월 22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와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2006 년 03 월 10 일 변경 2006 년 03 월 10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6 년 03 월 10 일 변경 2006 년 03 월 10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정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